#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7

발의연월일: 2024. 10. 15.

발 의 자:이강일·김남근·김남희

김우영 · 김 윤 · 김태선

민병덕 • 박주민 • 박지혜

박홍배 • 박희승 • 염태영

이용우 · 임미애 · 정성호

허 영·황운하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업체에서 1,708건의 산재신청이 있었는데, 질병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였음.

산재신청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배달업체에서는 라이더의 유 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에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 설, 제19조의5·제19조의6 신설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1항 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 우
-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제3장에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운 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

- 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등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

나 지정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 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 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043호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u>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
	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u>&lt;신 설&gt;</u>	<u>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u>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u>&lt;신 설&gt;</u>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

② (생략)<신설>

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체결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산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신 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 입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 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저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법률 제20043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3. (생 략) <u><신 설></u>

교육을 효율	적으로	그 실	]시하	<u>-フ]</u>
위하여 특별	<u> </u> ]시 • 된	강역시	] • 특	별
<u> 자치시・도・</u>	특별지	치도	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물
류서비스종사	자 연	수기	만을	직
접 설립하여	운영	하거니	<del>-</del> 기	정
<u>할 수 있다.</u>				
세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	의
의타) ①				

세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u>시・도</u>
<u> 지사</u>			

②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세51조(과태료) ①
1. ~ 9의3. (현행과 같음)

1. ~ 9의3. (연행과 살음) 9의4.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영업점10. ~ 14. (현행과 같음)

10. ~ 14. (생 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